

2019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659호
- 안 건 명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 5. 23
- 회부일자 : 2019. 5. 30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추경예산안 규모

- 푸른도시국의 세입의 기정예산 9,295억 1천9백만원이고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9,305억 1천9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2,900억 2천7백만원이고 262억 5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162억 8천6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5억 1천2백만원이고 121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2,626억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5억 1천6백만원이고 141억 4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조 536억 6천4백만원 편성함.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괄	1,316,286	1,290,027	26,259	2.04%
일반회계	262,622	250,512	12,110	4.83%
특별회계	1,053,664	1,039,516	14,148	1.36%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 2019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2개 사업, 121억 1천만원 증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5개 사업에서 141억 4천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추경사업 22개(121억 1천만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증액사업 21개사업, 감액사업 1개)

푸른도시국 (10,336백만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억 3천9백만원
	공원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42억 7천1백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25억 3천만원
	가로정원 조성	6억 1천6백만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억원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억 8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천2백만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8천3백만원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	5억 3천6백만원
	국비 반환금 5건	5억 6천8백만원
서울대공원 (1,775백만원)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7천만원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5천9백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억 5천만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	6천만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4억 1천만원
	동물사 유지관리	10억 6천만원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 3천3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사업 5건(141억 4천8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푸른도시국 (14,148백만원)	생활권 공원녹지조성	14억 8백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2억 1백만원
	암사역사공원 조성	12억 5천만원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7억원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95억 8천9백만원

Ⅲ. 추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1)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억 3천9백만원

- 서울로 7017 질서유지 근로자의 촉탁계약직 단체 및 임금협약 후 인건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 함.

2) 공원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10억원

- 공원 내 야외 다중이용 공간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를 신규 편성 함.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42억 7천1백만원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치구에서 인력 및 조직보강이 어려워 관련 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 함.

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25억 3천만원

- 미세먼지 및 도심 열섬화 저감을 위해 교통섬, 인터체인지 등에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가로숲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함.

5) 가로정원 조성 6억 1천6백만원

- 사업 대상지 '명일동 가로정원'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정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의 부족액을 증액 편성 함.

6)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억원

- 대상지 '성내동 일대 상징 가로공원' 수경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정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의 부족액을 증액 편성 함.

- 7)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억 8천만원
- 하천의 나지화된 제방, 둔치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의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하고자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함.
- 8) 산림병해충방제 1천2백만원
-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를 증액 편성 함.
-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8천3백만원
- 양묘장 꽃모 운반용 대형화물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 구입비를 증액 편성 함.
- 10)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 5억 3천6백만원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의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편성
 - 식물원 내 기프트샵 재료 구입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증액 편성
 - 식물원 내 그늘막 설치비, 식물원 홍보 및 각종 안내정보를 위한 안내 전광판 설치비를 증액 편성
- 11)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7천만원
- 서울대공원 매표 시스템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비 증액 편성 함.
- 12)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5천9백만원
- 서울대공원 경비대 축탁계약직의 단체 및 임금협약 인건비가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함.
- 13)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억 5천만원
-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펜스 설치비를 신규 편성.

14)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 6천만원

- '19년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의 위탁 연구기관으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내외 식물 보전 및 증식 연구'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 함.

15)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4억 1천만원

- 올해 추진 중인 동물원 정문 환경개선에 맞춰 교통카드 및 입장티켓 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동물원 매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입장게이트 및 무인발권기 교체 예산을 신규 편성 함.

16) 동물사 유지관리 10억 6천만원

- 사육사 및 동물 안전 관리를 위해 대형 동물사 및 방사장의 노후 시설물의 시설 보수비를 신규 편성 함.

17)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 3천3백만원

- 환경부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를 감추경 함.

18)~22) 국비 반환금 5건 5억 3천6백만원

- 푸른도시국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 함.

2.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별 내역

- 1) 생활권 공원녹지조성 14억 8백만원
 - 사업 대상지 중 1곳이 수용재결 등으로 보상비가 증액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다른 1곳은 보상비 중 일부만 2019년도에 편성되어 부족한 보상비 등을 증액 편성 함.

- 2)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2억 1백만원
 - 종로구 옥인동의 경찰건물(인왕CP)이 서울시로 재산이관 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도서관, 화장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비용을 증액 편성,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 공원 내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

- 3) 암사역사공원 조성 12억 5천만원(국비 10억원)
 -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국비 및 매칭 시비를 증액 편성 함.

- 4)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7억원
 -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사업은 캠핑장을 조성(기반 및 공원시설 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캠핑장 공사비를 증액 편성 함.

- 5)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95억 8천9백만원
 - 20년 7월 시설녹지 실효 시 시설녹지의 훼손과 각종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우선 보상대상 토지 보상비 및 녹지 정비비 등을 증액 편성 함.

IV. 검토 의견

1. 2019년 추가경정예산 개요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기정 예산 35조 8,139억 1천8백만원에서 2조 8,656억 9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38조 6,796억 1천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였음. (8.0% 증액)
- 푸른도시국 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 1조 2,900억 2천7백만원에서 262억 5천9백만원이 증액된 1조 3,162억 8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가 증액되었음.

2. 세부 사업별 의견

1) 공원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신규사업)

[기정: 0원, 신규: 10억원]

(사업설명서 1608~1610쪽)

- 서울시는 2019년 3월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해 시민생활공간에 공공와이파이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시내, 광역,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과 버스정류소 등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위 사업의 일환으로 시관리 공원에도 24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추경예산안에 10억원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임.

-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해서는 행정1부시장 산하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마을버스에 추가하도록 하여 금번 추경안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버스 무선와이파이 1,173대 추가설치, 1대당 31,950원), 버스정책과에서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도록 6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음. (버스정류소 359개. 설치비 33,000원, 요금 31,000원)

(사업설명서 313쪽, 681쪽)

- 버스나 정류소에 설치하는 이동형 와이파이와 다르게 공원의 공공와이파이는 별도의 시설공사가 수반되므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1대: 공유기 5백만원, 설치비 167만원),
- 금번 추경을 통해 11개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150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그중 보라매공원(38개), 북서울꿈의숲(30개), 여의도공원(28개)에 집중되어 있음. (첨부 1 참고)
-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가 약물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¹⁾,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얼마나 왜 위험한가?’²⁾ 등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에까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공공와이파이 공유기 1대의 영향 반경은 가로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100m 내외로 알려져 있음. 보라매공원의 경우 38개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원경관 및 공원훼손의 우려는 없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https://www.youtube.com/watch?v=Y-ka6TG1zXY&feature=share>

2) <https://www.youtube.com/watch?v=OG1OMBb9tnc&feature=share>

디지털기기는 다양한 정보와 흥미를 유발시켜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만, 밝은미래를 위해서는 각고의 인내심으로 엄청난 학문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스크린으로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없다. 인내심, 끈기, 의지력은 디지털기기를 통한 즉각적이고 수동적인 경험으로 키울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다. (중략)

디지털기기가 약속하는 낙관적 미래와 그것이 드리우는 비관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상위 인지기능 때문이다. 부모는 상위 인지기능을 발휘하여 자녀의 디지털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스마트폰을 손에 쥘 채 오래 앉아 있는 자녀를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자녀의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중략)

디지털기기를 들여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는 비자발주의가 익숙하다. 아이는 주의 기울이는 것을 별것 아니라 여긴다. 디지털 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저학년 때부터 스스로 주의 기울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학년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기는 아이, 루시 조 팰러디노, 2018, 마음친구 33쪽이하

-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6월 4일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목표로 버스과 공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본 사업을 공포한 것은 의회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첫째, 기정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둘째, 요구하는 시민이 많고 그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그리고 공원에 설치 후 공원의 모든 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설치시는 예산이 필요하고 추가설치를 불허할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후에 2020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신규사업)

[기정: 0원, 신규: 42억 7천1백만원]

(사업설명서 1622~1625쪽)

-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공원보상이 많은 3개 자치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기 위하여 42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① 세부계획이 부족했던 예산편성

-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9천6백억원의 공원용지 보상예산 편성시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보상금액이 많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조건하에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 그러나 예산편성 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급증했으나 기존 인력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보상업무를 위탁 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초 보상계획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2018년 9월 1차 추경예산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8억 3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당시 보상관련 부대비용은 감정평가 등 제반절차를 선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18년 결산에서는 3억 3천5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는 등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② 자치구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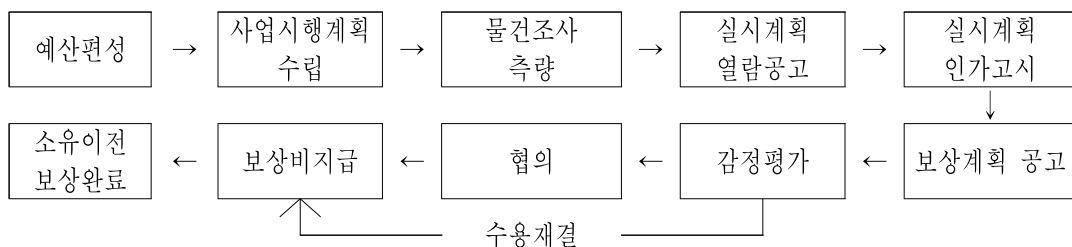
- 2019년 영등포, 중구, 용산구를 제외한 22개 구의 공원용지 보상에 9천 6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1,982억 2천7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3억 9백만원 임.

- 관 악 구 : 1,982억 2천7백만원
- 동 작 구 : 1,400억 4천9백만원
- 강 서 구 : 575억 3천만원
- 서 초 구 : 1,654억 9천5백만원
- 강 남 구 : 1,089억 3천7백만원
- 은 평 구 : 398억 8천5백만원

- 현재 편성된 위탁예산은 관악, 서초, 동작 3개 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며,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보상 업무 담당자가 현재와 같이 추진하여야 함. 보상금액이 많은 자치구만 보상업무 일체를 위탁자에게 맡기는 것은 직접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담당 직원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보상금액은 많지만 보상해야 하는 필지가 적은 경우도 있고, 보상금액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많은 필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업무량은 반드시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탁수수료 요율 등을 정한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③ 예산 산정근거 부족

- 일반적인 토지보상 업무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물건조사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보상대상지를 선정함.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후 협의를 통해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이 완료됨.



〈 토지보상 절차 〉

- 2019년 예산편성 후 6월말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조사와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진행하여, 보상이 완료된 필지가 있는 반면 절차상 감정평가와 협의단계만 남겨놓은 자치구도 상당수 있음. 위탁을 통해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기 추진된 업무가 있음에도 업무의 중간 단계에서 위탁계약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보상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금 산정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제43조제4항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할인율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위탁사업비의 근거가 불명확함.
 - 현재 위탁사업비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상향될 경우 위탁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별도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발생할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위탁금액은 자치구 전체의 보상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위탁금액 산정은 필지단위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산정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 그 예로 관악구 보상토지 및 예산은 218필지에 1,952억 4천만원인데 위탁수수료는 14억 7천만원이고, 서초구 보상필지 및 예산은 61필지 1,611억 9천1백만원 예산이지만 위탁수수료는 14억 7백만원임. 필지에 따라 소유주가 다수인 곳이 있어 업무량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위탁수수료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첨부 2, 첨부 3 참고)

- 또한 예산 편성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수수료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할인율 적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300억원 초과외 보상비 책정기준

= 44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SH공사 할인율

※ 서초구의 위탁수수료? (보상비: 1,619억 9천1백만원)

= {447백만원 + (1,319억 9천1백만원×0.01)×20%할인} + VAT

* SH공사 850억원 초과시 부터 10~30% 할인율 적용

④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 필요

- 2019년 공원용지보상은 자치구별로 진행하고 있음. 자치구별로 신속하게 처리한 곳도 있지만 보상업무 추진이 미진한 경우도 있음. 보상금액이 적어도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자치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기존 업무를 일괄 위탁하기 보다는 자치구별 추진현황을 확인 한 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보상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상업무 수행 실적에 따라 담당부서를 격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토지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지방공기업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보상전문기관이 있는 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독점으로 위탁하기 보다는 복수로 선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토지보상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천왕 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기정: 0원, 증액: 7억원]

(사업설명서 1626~1629쪽)

- 본 사업은 구로구 향동 149-1번지 일대에 27,550 m^2 의 토지를 보상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이후 56억 1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금회 추경에서 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2018년 결산보고에서는 2017년 이월되었던 7억 6천4백만원 중 5억 9백만원을 또다시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는 캠핑장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완료 이었음.
 - 2019년 현재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원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시작도 못하게 되므로 사전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당초 본 사업은 토지를 보상하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면적 27,550 m^2), 토지보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면적 9,124 m^2) 금회 추경에 7억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나, 캠핑장 조성을 위해 향후 추가될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하지 못한 계획이므로 총 공사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

※ 유사사례 - 관악산캠핑장 2017년 투자심사 결과

면 적: 14,347 m^2 (봉천동 256-1 일원)

사업비: 12,582백만원

(보상: 9,090백만원, 공사:3,343백만원 설계 등 149백만원)

4)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 58억 2천5백만원, 증액: 95억 8천9백만원]

(사업설명서 1650~1653쪽)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이 필요함. 푸른도시국 담당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이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녹지’³⁾의 보상도 시급한 실정임.
- 2019년 본 사업은 58억 2천5백만원 토지보상 및 시설정비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95억 8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54억 1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지속적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해서는 기초 현황 보고도 없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제출된 자료로는 추경예산의 시급성, 보상해야할 토지의 현황과 예산 사용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움.
- 본 사업은 푸른도시국 1차 추경안 262억 5천9백만원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이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할 어떠한 사유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시급성을 가늠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5)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 376억 2백만원, 증액: 12억 1백만원]

(사업설명서 1611쪽)

- 본 사업은 시 소유공원 81개소의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은 376억 2백만원임.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2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본 사업대상지 중 인왕산지역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결산당시 경호처,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여 20억 3천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지만, 인왕산지역 경관개선을 위해 공사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므로 이견은 없음.
- 서울시는 민선7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만들고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무심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나무심기 사업으로 훼손된 공원에 수목식재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원구 산지형공원 3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식재로 2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노원구의 산지형공원 3곳에만 나무심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무심기 사업의 활성화 보다는 공원정비사업의 일부분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푸른도시국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로변이나 공원이 아닌 하천이나 유희지 같은 장소에 나무 심는 계획이 집중되어 있어 보다 본 사업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참고로 25개 자치구의 훼손 지역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 지역의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수목식재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나무를 심는 것이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임.

6)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기정: 151억 9천9백만원, 증액: 25억 3천만원]

(사업설명서 1645~1649쪽)

- 본 사업은 자치구에 사무위임이 된 서울시 관리도로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151억 9천9백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25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및 녹지량 확충에 가로수는 서울의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본 사업은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영동대교 북단 등 11개소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한 15억 3천만 원은 도로구역의 교통섬, 인터체인지 등에 나무심을 공간을 발굴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감소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난 4월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를 통해 1,325건의 시민 제안을 받았으며, 나무심기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음.
- 나무심기를 활성화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없으며, 가로수 녹지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 구체성이 결여된 본 예산의 집행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기정: 100억 5천1백만원, 증액: 4억8천만원]

(사업설명서 1657~1660쪽)

- 본 사업은 도심 하천변의 훼손된 공간과 틈새 공간에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변 녹지를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천, 중랑천, 고덕천 등의 서울시 하천을 대상으로 100억 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금번 추경안은 본 사업에 3개 하천(도림천, 정릉천, 고덕천) 4억 8천만원을 추가한 것임.
- 본 사업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하천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대상이며,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2007)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2010)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 3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하천에도 나무심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하폭이 좁고 집중강우시 유실 위험이 있는 지방하천에 수목식재를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기존 2019년 사업 대상지 이외에 도림천, 안양천, 고덕천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고덕천에 편성된 1억 8천만원은 기 편성된 고덕천 사업과 중복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8)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

[기정: 70억 4천6백만원, 증액: 5억 3천8백만원]

(사업설명서 1657~1660쪽)

- 본 사업은 서울식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70억 4천7백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을 통해 5억 3천5백만원을 증액 하였음.
- 지난 5월 개장한 서울식물원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 하고(5천2백만원), 기념품샵 물량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5천만원 증액, 자원봉사자 활동비 2천4백만원 증액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 서울식물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현재 인수인계를 준비중임. 공원조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일부 부족한 시설에 대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 조치를 하려고 함.

- 현재 수목이 활착되지 못하고, 그늘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 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예산 3억 1천만원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운영자인 푸른도시국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거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9)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및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매수표소 운영 [기정: 2억 2천6백만원, 증액: 7천만원]

(사업설명서 1681~1685쪽)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기정: 32억 6천1백만원, 증액: 4억 9백만원]

(사업설명서 1699~1702쪽)

-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사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력과 사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9년 예산은 2억9천6백만원이며, 금회 추경을 통해 7천만원을 증액하였음.
-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매표시스템 개선의 명목이나 서울대공원의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기정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추경예산 7천만원에 대한 근거나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은 동물원 정문을 개선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32억 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을 통해 4억 9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증액한 예산은 전자검표 연동 ‘전산개발비’ 1억 8천2백만원과 입장권프린터, 무인발권기, 입장게이트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천7백만원임.
- 정문 개선은 현재 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선행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실정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2020년 5월 이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임.
- 인허가 및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발권기 및 입장게이트 구매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며,
- 페이코 결제 관련 시스템개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임(서울식물원의 경우 2천만원 예상)

참고 1.

공원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

○ 설치지역 : 300개소('19년 150개, '20년 150개)

공 원 명	합 계	'19년 설치	'20년 설치	기존
합 계	300	150	150	336
서울숲	6	-	6	20
응봉공원	1	1	-	6
보라매공원	38	38	-	6
천호공원	4		4	3
시민의숲	12	12	-	-
길동생태공원	5	5	-	-
울현공원	6	6	-	-
남산공원	16	-	16	5
낙산공원	5	5	-	-
용산가족공원	9	9	-	-
간데메공원	2	-	2	2
중랑캠핑숲	22	-	22	6
북서울꿈의숲	30	30	-	2
서울창포원	3	-	3	3
경춘선숲길	22	-	22	21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10	-	10	14
월드컵공원(난지천공원)	9	9	-	-
월드컵공원(노을공원)	8	-	8	6
월드컵공원(하늘공원)	3	-	3	3
경의선숲길공원	23	-	23	5
서서울호수공원	18		18	5
푸른수목원	7	7	-	13
여의도공원	28	28	-	-
선유도공원	3	-	3	4
문화비축기지	10	-	10	4
서울식물원	-	-	-	127
어린이대공원	-	-	-	82

참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	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5.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비고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 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보사업무의 위탁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p>제81조(보사업무 등의 위탁)</p> <p>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단체</p> <p>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p> <p>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참고 3.

공원용지 보상 위탁 수수료 산출내역

기관명	공 원 명	필지수	보상예산	위탁수수료	보상면적	산 출 내 역	비고
동작구	소 계	41	129,055,990	1,006,292	226,011.6		부가세 별도
	까치산 근린공원	23	80,247,793	1,006,292	130,659.0	= {447,000,000원 + (129,055,990,000원 - 30,000,000,000원) * 10/1000} - {30% * {447,000,000원 + (129,055,990,000원 - 30,000,000,000원) * 10/1000}}	할인율 30%
	현충 근린공원	8	48,808,197		95,352.6		
관악구	소 계	218	195,239,957	1,469,580	403,014.8		부가세 별도
	장군봉 근린공원	15	11,189,746	1,469,580	22,433.6	= {447,000,000원 + {(195,239,957,000원 - 30,000,000,000원) * 10/1,000}} - {30% * {447,000,000원 + (195,239,957,000원 - 30,000,000,000원) * 10/1,000}}	할인율 30%
	상도 근린공원	3	3,508,987		8,350.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200	180,541,224		372,231.0		
서초구	소 계	61	161,191,378	1,407,131	175,785.2		부가세 별도
	서리풀 근린공원	21	94,377,181	1,407,131	86,228.4	= {447,000,000원 + {(161,191,378,000원 - 30,000,000,000원) * 10/1,000}} - {20% * {447,000,000원 + (161,191,378,000원 - 30,000,000,000원) * 10/1,000}}	할인율 20%
	방배 근린공원	11	26,607,370		20,933.6		
	말죽거리 근린공원	12	31,470,210		21,466.2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9	2,893,939		11,780.0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8	5,842,678		35,377.0		

2019년 제1차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증액	비고
푸른도시국 소 계(20건)					24,484	
1	공원녹지정책과	생활권 공원녹지조성	시설비	8,372	1,408	
2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시설비	-	1,000	(신규)
3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 7017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95	139	
4	공원녹지정책과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시설비	26,153	1,201	
5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4,271	(신규)
6	공원조성과	암사역사공원 조성	시설비	2,472	(x1,000) 1,250	
7	공원조성과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시설비	0	700	
8	조경과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	5,825	9,589	
9	조경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	15,199	2,530	
10	조경과	가로정원 조성	시설비	2,293	616	
11	조경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2,950	100	
12	자연생태과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561	12	
13	자연생태과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시설비	10,042	480	
14	동부녹지사업소	동부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상업용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	83	
15	서울식물원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	사무관리비	1,033	150	
			기간제근로자보수	1,738	52	
			시설비	45	310	
			기타보상금	21	24	
16~20	전부서	정책과(53), 조성과(13), 조경과(68), 생태과(192), 산지과(241)	반환금	-	584	
서울대공원 소 계(7건)					(X△10) 1,775	
1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전산개발비	226	70	
2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259	59	
3	서울대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시설비	7,709	150	
4	서울대공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	사무관리, 재료비 등	-	60	
5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시설비	3,261	-	
			전산개발비		182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7	
6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증보전연구	사무관리비 등	333	(X△10) △33	
7	서울대공원	동물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241	1,060	